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2월 25일, 이은미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은미 의원)

가.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사
- 별지 서식 내용 변경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에 따라 별지서식 서비스유형 중 ‘마’형 추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은미 의원
- 제안일자 : 2026. 02. 25.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2.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사
- 별지 서식 내용 변경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에 따라 별지서식 서비스유형 중 ‘마’ 형 추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이돌봄사’ 라고 정의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조례상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법 체계의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2호)’ 에 따라 기존 서식의 서비스 유형에 부재했던 ‘마’ 형을 반영하여 제도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는 “아이돌보미” 를 “아이돌봄사” 로 하고,
- 별지 서식 중 서비스이용 대상자의 유형에서 ‘마’ 형을 신설하며,
- 그 외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병행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단순 용어 변경 및 서식 현행화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2025. 4. 22.>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15-12호(일부발체)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가.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미 의원)

의안 번호	542
----------	-----

발의연월일: 2026년 2월 25일

발 의 자 : 이은미 의원

찬 성 자 :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의원

1.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사
- 별지 서식 내용 변경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마’형 신설)에 따라 별지 서식 서비스유형 중 **마형** 추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 나. 예산조치 : 불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6. 2. 10. ~ 2026. 2. 23.(14일간), 의견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아이돌보미”란”을 ““아이돌봄사”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에서 근거한 아이돌봄 사업

제4조 중 “신청일로부터 보호자”를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로,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를 “두고”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1조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라형”을 각각 “라형 □ 마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아이돌보미”</u>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p> <p>5.·6. (생략)</p> <p>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u>법에</u>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p> <p>2. <u>법에</u> 근거한 <u>아이돌보미 사업</u></p> <p>3. ~ 5. (생략)</p> <p>제4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u>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u>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u>실제 아이와 함께</u>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p> <p>제9조(<u>아이돌보미의</u> <u>처우개선</u>) ① 군수는 <u>아이돌보미의</u> 활동수당을</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아이돌봄사”</u>란 ----- ----- ----- ----- -----.</p> <p>5.·6.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사업) ----- ----- -----.</p> <p>1. <u>법에서</u> ----- -----</p> <p>2. <u>법에서</u> 근거한 <u>아이돌봄 사업</u></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 <u>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u> <u>이</u>----- <u>두고</u> ----- ----- -----.</p> <p>제9조(<u>아이돌봄사의</u> <u>처우개선</u>) ① - --- <u>아이돌봄사</u>-----</p>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봄사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인성 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가. 관련 조문 : 제5조, 9조

나. 비용발생 요인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에 본인부담 지원금 확대 지원

구 분	2025년도 소득기준(중위소득)	2026년도 소득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 완화	○ 가형 : 75%이하 ○ 나형 : 120%이하 ○ 다형 : 150%이하 ○ 라형 : 200%이하 ○ 마형 : 200%초과	○ 가형 : 75%이하 ○ 나형 : 120%이하 ○ 다형 : 150%이하 ○ 라형 : 250%이하 ○ 마형 : 250%초과	라, 마형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추가 발생 ▶ 본인부담 지원금 확대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가.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6년도 당초예산에 본인부담금 지원 60,000천원을 기 편성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상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추산됨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본인부담금 지원	60,000	67,000	75,000	84,000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서진
연락처	(033) 330 - 2124